##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 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가</u> <u>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u>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장



# 정 보 공 개 서

㈜오투라인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51005]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5.10.16.]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4.29.]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3, 603호(구로동, 에이스트윈타워2차) ㈜오투라인 Tel. 1600-5290 Fax. 02-2109-5290 http://www.gang-a.kr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Ⅱ.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 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 는 시ㆍ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 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	지	주 소						
	거꾸로수업 플립수학		서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73, 603호					
	외 1개			(구로동,에이스트윈타워2차)					
(주)오투라인	법인 설립	등기일	사업자 <del>등록</del> 일	대표자	대표	대표팩스번호 대표팩스번호			
(구)소구니인	2001.02	2.28	2001.03.01	안남재	1600-5290		02-2109-5290		
	법인등록번호 110111-2182238 <b>사업자등록번호</b> 105-8			-86-22701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영업표지	주	소
가맹본부	㈜오투라인	거꾸로수업 플립수학 외 1개	서울 구로구 디지 (구로동, 에이 <u>-</u>	
- 특수관계인	안남재(대표이사)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임원)	김정은(사내이사) 박권수(사내이사)	안남재	1600-5290	02-2109-5290

###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있거나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다른 기업 을 인수·합병(가맹사업 관련 사업 양도·양수 포함)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칭	거꾸로수업플립수학	
λŀ <del>¯</del>	거꾸로수업플립수학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 명을
상 호	○○ 교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11 m / 11 m 1 m 1	기ᄁᄀᄼᅅ픠ᄼᇶᅡ	서비스표 등록번호: 4500701210000
상표(서비스표)	거꾸로수업플립수학	자세한 내용은 I-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영업표지	거꾸로수업 플립수학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 그 근거자료는 [별첨1]과 같습니다.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 <del>본총</del> 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2,434,046	1,569,138	864,908	3,815,409	-192,375	-196,460
2022년	2,654,222	1,553,440	1,100,782	4,353,303	301,170	235,873
2023년	2,555,281	1,206,981	1,348,300	4,976,444	313,523	247,517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격서법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관련여부	기급	ዊ ማጠ	기간	간 직위 담			
	안남재	대표이사	2003.08.08.~현재	대표이사	회사업무총괄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정은	부사장	2010.03.27.~현재	이사	경영지원		
	박권수	이사	2010.03.27.~현재	이사	연구개발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T-1	임원-	수(명)	기이 사(대)
시점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3	0	25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 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오투라인	가맹사업 경영	2013.09~현재	강의하는 아이들 (등록번호:20130468)이라는 브랜드의 가맹사업 경영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 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거꾸로수업 플립수 <b>학</b>	09류 16류	2016.03.30. 출원	출원 4520160002564	㈜오투라인	2026.12.12	
(상표권)	41류	2016.12.12 등록	등록 4500701210000	(M) <del>스</del> 구역 년	2020.12.12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Ⅱ. 가맹본부의 거꾸로수업플립수학 가맹사업 현황

1. 거꾸로수업플립수학 가맹사업 시작일 : 2015 년 07 월 15 일

## 2. 거꾸로수업플립수학 가맹사업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오투라인	강아주니어	안남재	2015.07~2015.12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3, 603호(구로동,에이스트윈타워2차)
㈜오투라인	거꾸로수업 플립수학	안남재	2015.12~현재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3, 603호(구로동,에이스트윈타워2차)

## 3. 거꾸로수업플립수학의 업종

영업표지	업	<u> </u>
기끄크사어프리사하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거꾸로수업플립수학	교육서비스	수학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거꾸로수업플립수학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7] (1)	2021.12.31			2022.12.31			2023.12.31		
지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2	22	0	14	14	0	13	13	0
서울	8	8	0	3	3	0	3	3	0
부산	1	1	0	1	1	0	1	1	0
대구	1	1	0	1	1	0	1	1	0
인천	0	0	0	0	0	0	0	0	0
광주	0	0	0	0	0	0	0	0	0



대전	0	0	0	0	0	0	0	0	0
울산	0	0	0	0	0	0	0	0	0
세종	1	1	0	1	1	0	0	0	0
경기	8	8	0	7	7	0	7	7	0
강원	0	0	0	0	0	0	0	0	0
충북	0	0	0	0	0	0	0	0	0
충남	1	1	0	0	0	0	0	0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0	0	0	0	0	0	0	0	0
경북	1	1	0	0	0	0	0	0	0
경남	0	0	0	0	0	0	0	0	0
제주	1	1	0	1	1	0	1	1	0

## 5. 바로 전 3년간 거꾸로수업플립수학의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3	0	0	1	_	22
2022	22	0	0	8	_	14
2023	14	0	0	1	_	13

## 6. 거꾸로수업플립수학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거꾸로수업플립수학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 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l	7 H	사는 /이르	여어교기	정보공개서	보공개서		점/직영점의	기 수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등록번호	업종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오투라인	강의하는 아이들	20130468	교육서비스업	91/2	91/2	96/2

##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거꾸로수업플립수학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 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	023년 가덕	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 매출액		
지역	2023년말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 매출액(		연간 매출액		비고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
전체	13	26,413	1,232	56,196	7,423	2,676	150	9곳 산정
서울	3							5곳 미만
부산	1							5곳 미만
대구	1							5곳 미만
인천	0							
광주	0							
대전	0							
울산	0							
세종	0							
경기	7	25,645	1,192	56,196	5,620	10,704	324	강주 배곧, 안양 임곡, 안양 안양동 제외
강원	0							
충북	0							
충남	0							
전북	0							
전남	0							
경북	0							
경남	0							
제주	1							5곳 미만

\*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 매출액 = 학생수 x 평균학원비 228,000원 ]으로 추정하였습니다.

※ 당사의 가맹점 집계 매출은 가맹점의 전체 매출이 POS 시스템을 통하여 본사로 집계된 다음 로열티를 가져가는 방식이 아닌, 가맹사업자가 당사의 시스템을 적용한 특정 해당 학년 범위 내 에서 신고한 학생 수 데이터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맹점의 실제 전체 매출보다 다소 축소되어 산정됩니다.



※당사의 가맹점 중 영업일이 1년이 안 되는 가맹점이 있어 월평균 매출액을 산출한 다음 1년으로 확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오픈 후 6개월 미만 영업한 가맹점 및 영업을 일시 중단한 가맹점의 데이터는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표에서 기재한 연간 평균 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수 13개가 아닌 실제 9개가맹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추정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거꾸로수업플립수학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강의하는 아이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 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년	13 개	2,763일

\* 전체 가맹점 13개 중 가맹점의 사정으로 영업을 일시 중단한 가맹점도 4곳도 포함하여 영업 기간을 산정하였습니다.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거꾸로수업플립수학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별도로 가맹지역본부를 운영하지 않으며, 당사에서 모든 가맹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1년에 거꾸로수업플립수학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 습니다.

(단위: 천원, VAT미포함)

7 8	入口L	コーフト		지출 비용		비고
구분 수단		기간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11 <u>17</u>
광고비	비공개	비공개	ı	-	ı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 은행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등 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금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지점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02-729-6764

####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del>용</del>
기업은행	매장직접 방문시	① 가맹계약 체결 및 예치신청서 교부→ ② 은행(지점)방문→ ③ 가맹금 예치신청서 제출 및 가맹금 입금→ ④ 가맹금예치증서 교부받아 보관
	인터넷킹 이용시	① 인터넷뱅킹(www.ibk.co.kr)접속→ ② 뱅킹로그인→ ④ 부가서비스/ 가맹금 인터넷 예치서비스/가맹상업지 클릭→ ⑤ 가맹본사 사업자등록 번호 확인→ ⑥ 가맹본부확인→ ⑦ 가맹점사업자 정보입력 및 예치금액 입력→ ⑧ 가맹금예치금완료
	생 계좌가 사업자	기업은행 계좌개설 후 위의 절차시행
계좌 개설시	본인이 개설시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② 실명확인표(신분증)



		① 가맹금예치신청서(가맹본부 발행)	
51012	대리인	② 실명확인증표(신분증)	
필요서류	개설시	③ 위임장	
		④ 대리인 실명확인증표(신분증)	

####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알아 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 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가.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SGI서울보증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 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 <del>용</del>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
보험계약자	㈜오투라인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예치금액(최초 가맹금)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 보험증권 본문의 내용은 [별첨2]으로 대체합니다.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 회 횡령 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 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거꾸로수업플립수학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 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최초 가맹금은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VAT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비고
총계	440		
가맹비	385	게야 체겨	- 가입비(가맹비의 10%: 비소멸성 비용) - 개점 전 정보·자료제공비, 개점 전 운영 컨 설팅비, 초도물품비(설치비의 90%: 소멸성 비용)
개원 전 교육비	55		- 개원 전 프로그램/서비스 교육(3일 기준)

<sup>\*</sup> 반환조건: 가맹비는 계약체결 이후 반환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가맹사업법 제10조의 경우에는 일부 반환될 수 있다.

#### 2) 보증금

당사는 귀하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현금 및 담보물을 받지 않으며, 이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sup>\*</sup>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점 오픈을 위하여 소멸되는 비용으로 반환 안 됨.



#### 3)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치가맹금(또는 피해보상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 습니다.

(단위: 만원, VAT포함)

구분	금액
합계	440
가맹비	385
개원 전 교육비	55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만원, VAT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 <b>액</b> 132㎡기준 (약40평)	면적 3.3㎡당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6,021				
간판		250	해당없음	별도계약	지급대상이	매장상황 및
교육집기	7LUN 1LON 7L	571		업체와 가맹사업자간	가맹본부가 아님으로	가맹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인테리어	가맹사업자 별도계약	5,200	130	의 계약서에 따름	해당사항 없음	변동될 수 있는 금액
별도금액		철거, 화장		기, 소방설비, 전화기, 컴퓨터	외장, 전기증설, 터 등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 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약체결 시 캠퍼스 실측 후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일정 및 품질에 따라 상기 지급대상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 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 , 구매 , 유지하여야 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당사 브랜드와의 적합성 판단	점포계약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계약 기준	교육ㆍ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시	-2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 -본사의 선발기준 및 면접 -관할 교육청의 학원설립, 운영등록 및 국세청 사업 자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보조교사/강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2년제 대학 졸업자 이상 -가맹점사업자 면접합격자 -교육이수 가능 자 -관계법령, 관할 교육청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일반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특별한 기준 없음

####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거꾸로수업플립수학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 상기 내역은 캠퍼스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점포 실측 후 계 약 체결 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 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계약 체결 시 가맹금에 대해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VAT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및 방법	반환조건 및 반환도리 수 없는 사유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V-8-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VII-1]점포환경개· 나머지		H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은 [Ⅷ-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당사의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계속가맹금	가맹본부	[V-3-(3)] 참고	익월 10일 당사에 지급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기본 교재 및 온라인 강의 사용료로 반환되지 않음

####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 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VAT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 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여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통제·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 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에게 30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립니다. 귀하는 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을 기준으로 20일 이전에 당사에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양수한 사업자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체결한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는 잔여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락 받은 경우에는 제3자와 당사의 계약해지에 의해 지식재산권의 사용이만료될 수 있습니다. 만료될 경우 당사는 해당일로부터 20일 이전에 귀하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간판, 설비, 집기 등에 부착된 영업표지의 변경비용은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분담합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중단할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가맹계약의 잔여일수를 기준으로 안분한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교육비(55만원, VAT 포함) 등의 실비를 납입하고 별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합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조치를 계약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가맹본부에 대한 채무 전액의 변제
- ②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만료나 해지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지체 없이 가맹본부의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가맹본부가 제공한 설비, 전산시스템 등 영업 관련 자산을 가맹본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③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사로부터 제 정산 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나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잔존 채 무·손해배상액의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 제 1항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④ 제 2항의 철거 · 원상복구의 비용은 계약이 귀하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귀하가 부담하고 당사의 귀책사유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한다. 다만, 합의해지의 경우에는 당사와 귀하가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 ⑤ 당사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⑥ 귀하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⑦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가맹사업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서비스의 표준화를 통해 고객에게 통일된 이미지를 심어 주어 고객이 언제 어느 가맹점을 가도 같은 서비스를 느낄 수 있도록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 는 것입니다. 나아가 고객의 브랜드충성도, 브랜드신뢰도를 제고시켜 전체 가맹점사업자의 공동발 전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보 시기 바랍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거꾸로수업플립수학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 ㆍ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 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품목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ㆍ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거꾸로수업플립수학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 목 등과 관련하여, 당사는 특수관계인과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습니다.

####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 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상품、용역、거래상대방、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용역의 판매 제한

- 가)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 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당사가 지정한 서비스만 판 매 · 구성해야 합니다. 지정된 서비스를 판매 · 구성하지 않거나 다른 서비스를 판매 · 구성하는 경우에는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나) 당사가 귀하에게 지정한 서비스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등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 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서비스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 당사는 개정 학원법 시행령 제 3조의 2의 개정으로 캠퍼스에서 회원에게 교자재를 판



매할 수 없게 되어 당사에서 직접 회원에게 교자재를 판매합니다. 이에 귀하는 당사의 상표 권을 보호하고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에서 교육하고 지정한 서비스만을 판매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자재ㆍ서비스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거꾸로수업플립수학 교재 및 온라인 시스템	- 당사가 제시하고 교육한 표준 교육방침 준수 - 과외 등의 방법 금지 - 교육내용이나 형태 변경 시 당사와 사전협의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서비스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교자재의 판매

귀하는 당사가 공급한 교자재를 타 브랜드 캠퍼스에 공급하거나, 기타 일반판매 등 당사와 계약한 귀하의 점포가 아닌 다른 곳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인근 거꾸로수업플립수학 가맹사업자의 물품 부족 비상시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당사 가맹점 소속 학생을 제외한 타 브랜드 캠퍼스 및 일반인	교자재 전품목	가맹점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요청과 그에 따른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는 공급 받은 상품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학년	교재명	가격(VAT별도)
----	----	-----	-----------



이미 하스	초등		12,000
온라인 학습	중등		22,000
	÷ =	본교재	17,110
필수 교재	초등	익힘책	4,270
	중등	가우스	7,840
선택 교재	초등	방학특강 본교재	18,700
(선역 표계	중등 중등		4,010
日本口	7 F	개념노트	2,200
부속물	공통	리플릿	400

<sup>※</sup> 상기 품목의 구성은 교재의 개편과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 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드이랑 어쪼 뛰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초중등 대상으로 한 수학 과외, 교습소, 학원	거꾸로수업플립수학	해당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 내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아파트 단지와 단지 내 상가거점기준 세대 수 2천~3천 세대 1개 가맹점 (다만, 특수상권은 제외되며 상권에 따라 상기 기준보다 더 넓거나 좁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도로 표시

- ※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ㆍ쇼핑몰,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대학교 내, 종합병원, 공항, 호텔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 ※ 가맹본부가 일부 상품 및 원부재료로 유통사업을 할 경우 해당 유통망은 귀하의 영업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 당사는 귀하의 영업지역 내에 거꾸로수업플립수학 직영점 및 다른 가맹점을 설치하지 않습니 다.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ul> <li>① 도로사정의 변경,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li> <li>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li> <li>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 · 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li> <li>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ul>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가맹사업자에 게 서면 통지→가 맹점사업자 동의 →영업지역 변경	30일 이내에 동의 여브 하시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교육서비스를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귀하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에게 회원모집, 차량운행 등의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습니 다.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거꾸로수업플립수학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직영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 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 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 비중

(단위: %)

	-	국내 온라인·오프라	인 판매 매출액 비중	<u>ナ</u> 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년	23%	0%	77%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년	26%	74%

당사의 가맹 사업은 온라인 학습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부수적으로 학습교재를 판매하고 있어 오프라인으로 판매된 교재 상품의 수를 제외한 온라인 상품의 수를 책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기 판매상품의 비중은 상품 수를 측정할 수 있는 교재 종류에 기반하여 매출액 대비 온라인 전 용상품 비중을 역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거꾸로수업플립수학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 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 약기간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 년간 연장됩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 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 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 사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귀하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가맹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 한 사항
- 나. 판매하는 교재나 교육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수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 당사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 라. 당사가 귀하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 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 다만, 귀하가 부담 하는 교육 · 훈련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 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계약 해지 사유	관련조항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단, 신축 건물의 경우에는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영업 개 시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37조 1항 (1)
0	가맹점사업자가 학원운영과 수업을 당사의 거꾸로수업플립수학 운영 시스	37조 1항 (2)



	템 매뉴얼에 따라 하지 않는 경우	
0	가맹점사업자가 당사가 제공하는 회원관리 사이트에 학생등록을 2회 이상 누락 또는 허위 등록하는 경우	37조 1항 (3)
0	가맹점사업자가 교재 복제 등 기타 당사의 영업 및 운영방침에 반하는 운 영을 하는 경우	37조 1항 (4)
0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에게 지급해야 할 최초 가맹금 이나 초도물품, 사용료 및 기타 대금 등을 사유 없이 2개월 또는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37조 1항 (5)
0	가맹사업자가 본 계약의 내용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37조 1항 (6)
0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영업표지(상표)에 대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37조 1항 (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 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조항
o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7조 2항 (1)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이 정지된 경우	37조 2항 (2)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7조 2항 (3)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7조 2항 (4)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7조 2항 (5)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	37조 2항 (6)



	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 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 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7조 2항 (7)
0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0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7조 2항 (9)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변경내용이 있을 시에는 귀하와 협의(동의)를 거쳐 정하고 있습니다.

##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 절차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1개월 전) → 양도인/양수인 면담 → 승인 여부 통지(20일| 이내)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지급)→ 양수 인 교육→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당사는 귀하의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양수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 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위탁하게 하거나 동업, 전전세, 점포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V-6-2)의 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 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맹점운영권이 상속될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에 그 사실을 서면 으로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당사는 승인, 거절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당 사의 승인을 받은 상속인은 소정의 교육비를 당사에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승인 거절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가맹계약은 종료됩니 다.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거꾸로수업플립수학의 교육 시스템은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 연구개발 노력 등을 투입하 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된 영업비밀 또는 영업노하우로 계약의 존속 중에 귀하 및 귀하 가 제 3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기간	제한업종	제한지역
계약기간 중	초중등 대상으로 한 수학 과외, 교습소, 학원	국내 전 지역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거꾸로수업플립수학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월~금 13:00~22:00 토 09:30~14:30	주 6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얻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는 권장사항이며,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가맹점의 대상 학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 일정기간 휴무 시 당사 승인, 공휴일 제외)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 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가맹사업자 자율	직접 근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 영업장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거꾸로수업플립수학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광고 및 판촉 활동 필요 시 전국규모 또는 지역단위의 광고 및 판촉을 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대한 분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구분		가맹본부 부담	가맹점사업자 부담	분담절차	
	가맹?	점모집광고	100%	_	-
광고	7)	]별광고	-	100%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 통일성 여부 검토→ 10일 내 승인여부 통지
	전국 및	브랜드광고	50%	50%(전체	광고/판촉 진행 시 별도 협의



	지역별 브랜드광고+2 광고 맹점모집광고 전국 및 지역별 판촉		또는 지역 가맹점에 안분)	
판촉	개별판촉	-	100%	가맹본부에 판촉계획안 발송→ 당사의 브랜드 통일성 여부 검토→ 승인여부 통지

귀하가 자기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당사에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학습법, 콘텐츠,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 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가맹사업계약 기간 중 습득하게 되는 당사의 영업비밀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포하거나 귀하의 가맹점 영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영업비밀의 범위	기간
당사가 제공한 교육의 세미나 자료 및 기타	영업비밀 보호 의무는 가맹계약의 유지기간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당사의 영업비밀이	동안은 물론 해지 및 종료 이후에도
담긴 관계서류	유지됩니다.

※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 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가맹사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에 대하여 가맹본부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가맹사업자는 연이율 (20)% 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Ⅵ.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 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43일(점포개발 및 상권분석기간 제외)	
가맹희망자 문의	전화, 홈페이지문의, 방문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14일	IV.
가맹계약체결	- 가맹금 예치 및 피해보상보험 안내 - 가맹계약체결	1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점포실측 및 도면미팅	- 투자비 산출 - 도면협의 및 개점스케줄링 확인	2일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공사 착수	공사 실시	20일	1)~4) <del>를</del> 참고하시기
교육 실시	운영 및 서비스 교육(공사기간 중 실시)	3일( <del>총</del> 9시간)	바랍니다.
영업설비/ 집기 입고	컴퓨터, 책상 등 입고	2일	
초도물품 입고	교재 등 입고	1일	
그랜드 오픈	- 영업 시작 - 판촉 및 홍보 이벤트 - 예치가맹금 수령	당일	

-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그 기간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 \*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 점포선정이 늦어질 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늦어질 시
  - 가맹점희망자 ·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협의 시
  - 종업원 채용이 늦어질 경우



#### ※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방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 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 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No.	방법	비고
1	전문가 연락 (방문/전화 등)	귀하가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2	전문가의 자문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해 가맹거래사 or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3	자문확인서 수령	자문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거래사/변호사로부터 수령 후 해당일자를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4	가맹본부 제출	가맹본부에게 자문확인서를 제출합니다
5	가맹계약 체결	귀하는 정보공개서 수령 후 7일 이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맹계약서를 제공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와 귀하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 노력으로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또는 시도 분쟁조정협의회에 조 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 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 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 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 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 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인테 보후 장비, 의 등의 객관적 이 등의 객인정 이 가 로 경우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 비용(장비·집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 축공사에 소요 되는 일체 가맹점사업의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 가 추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전을 수반 하지 않는 점포환경개 선: 20% O점포의 확 장 또는 이 전을 수반 하는 점포	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산 별도의 합의가있는 경우 1년의 범위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유로 이내에 사유로 (계약의 사용에 (계약의 사용에 여입양도 계약이 기대본부 중에 부담해 가능 이 지급하지 하는 기가능 이미에는 경우가능



30%, 2차 : 1차 지급 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 일 내, 총 부담액의 40%)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를 운영하 고 있지 않습니다.

###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점 운영과 관 련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 점에 방문→ 경영활성화를 위한 가 맹점 개선사항 파악→ 개선사항 발 생 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 용 안내→개선사항 시정	가맹본부 부담 (단, 개선에 소요되는 비 용은 가맹점 부담)
가맹점사업 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 에 대한 경영지 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 일시, 소요비용 등 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 → 가 맹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해당사항 없음



## Ⅲ.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최소시간, 비용

당사는 거꾸로수업플립수학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및 훈련은 귀하 및 가맹사업장의 직원들이 모두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3. 교육 · 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1)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규 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들의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재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2) 귀하는 당사의 신교육서비스 개발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고 해당 교육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3)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신교육서비스 교육 외 당사가 실시하는 정기교육 및 부정기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교육 시 발생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거꾸로수업플립수학팀 (Tel. 1600-529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 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 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해당 사항 없음.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 해당 사항 없음.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 해당 사항 없음.



## [별첨1] 재무제표(2021~2023)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 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 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별첨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본문 내용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 가맹본부보증보험증권

증권번호 제 100-000-2024 0167 4982 호

보험계약자	105-86-22701 (주)오투라인	피보험자		
	안남재	6 10 (19) 32 14 15		
보험가입금액		1	보험료	
책임담보기간	가맹계약체결일과 최초예치가맹금 납부일 중 먼저 도	래하는 날부터 가맹계약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	한 날과 피보험자의 가맹사업개시일 중 만	전저 도래하는 날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예치가맹금 반환 보증
특별약관	1.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회사는 책임담보기간이내에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예치가맹금 반환요구를 하여야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주계약내용	[가맹사업내용] 정보공개서등록번호 영업표지 예치가맹금액 계약체결일자

####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하는 내용'이 '주계약상 보증이 필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발급사실 및 보험약관, 보상심사 진행사항은 회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가맹본부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가맹본부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 하니다. 본 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제공됩니다.

	cila lad	대리점명	에스제이
증권	대리점	모집자 고유번호	김승집 20010162050009 (02-869-5396)
발급	7174	구로디지털지점	02-846-0021
	지점	서울 구로구 디기	지털로 300 10층 (구로동, 지밸리비즈플라자)

2024년04월15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자

대표이사 이 4% 多



대한민국 정부 인지세 200원 종로세무서장 인쇄승인 제2003-1호

SGI was rated "A+(stable)" by S&P Global Ratings

**Fitch Ratings** 



준법경영시스템 

-000000-





(10-02-243, 2022.08.01) [증권번호: 100-000-202401674982] [보증보험용(공통)]

#### 보험약관 주요내용

※ 세부사항은 보험약관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채무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나 전쟁·내란·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2. 계약자의 변경
- 3. 피보험자의 변경
-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 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⑥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 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 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소멸시호]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준거법]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 보상서비스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www.sgic.co.kr) 또는 보험금청구접수부서를 통해 보험금 청구 관련 필요서류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접수가능)하시면 보상심사가 진행됩니다.

 보험금청구전수부서(담당부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보상1센터
 02-3671-8115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심사를 위해 심사자료 추가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인터넷, 우편,방문)
 ▲ 접수 & 보상담당자 지정
 보상심사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 'SMS' · 'e-Mail' 발송에 동의하시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보상심사 진행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부터 '자료제출', '담당부서 조회' 및 '진행사항 확인'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경로 : 홈페이지(www.sgic.co.kr) > 보상서비스 > 보상안내 / 보험금 청구 / 보상자료 제출



#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현황/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본사보관용)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변	<sup>번</sup> 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수령장소						
A 74 FLOI	아래 빈칸에		·개서/인근 습니다."리			l/가맹계약서를
수령확인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인근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광역지	방자치단체	>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무단 도용 및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가맹본부 (주)오투라인 (인)



## 정보공개서/인근 가맹점현황/가맹계약서 제공확인서(점주용)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변	<sup>번호</sup>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시
수령장소						
	아래 빈칸에					l/가맹계약서를
수령확인	<b>수령했습니다</b> ."라고 작성해주세요.					
1075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u>가장 인근에</u>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광역지'	방자치	단처	>
-------	-----	----	---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세종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내용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무단 도용 및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녀 월 일

> > 가맹본부 (주)오투라인 (인)



#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변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상호(가맹점명)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i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		
신청인의 계 좌			
가맹본부의			
계좌			
「가맹사업거리	H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sub>+</sub>	제 6 조의 5 제 1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5 제 1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의 7 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